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52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채연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피고, 항소인 기획재정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박 , 강)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2구합6804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29.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이유' 아래 2행의 "2022. 5. 6."을 "2022. 5. 2."로 고친다.
- 3면 13행의 "초래하게 되므로"를 "초래하며,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제한되므로"로 고친다.
- 4면 17행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피고에게"로, "기획재정부장관은"을 "피고는"으로 모두 고친다.
- 6면 10행부터 7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피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정보에서 '① 특정 직역·지원 예산 미반영, ② 사회적 논란 가중이 우려되는 예산 감액, ③ 예산요구서 부실화가 우려되는 예시, ④ 비공

개 필요성이 있는 정보'를 특정하였다.

피고의 ① 내지 ⑤ 부분의 주장은 결국 예산요구서에서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압력이 증가하고, 예산 검토기간이 늘어나며,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현 단계에서는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기획재정부 내지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요구한 예산이 예산안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피고(국가 재정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등)와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법 제45조 제1항)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예산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국민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위와 같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는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정부는 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제1항),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게 되면 정부 부처가 보여주기식 예산 요구를 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오히려 정부 부처들의 무분별한 예산요구를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예산 편성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피고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또한 정부 부처가 비합리적인 예산요구를 하거나, 예산요구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그 담당자들을 비난할 문제이지,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④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정보'와 같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공개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해당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가 제약되며, 의사결정과정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도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 전문가, 공익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요구서에 기재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어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u>이승한</u>
			<u>심준보</u>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김 종 호

임금용

별지1

목 록

2021. 5. 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
구서

열람용